

의안번호	제2898호
의 결	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발 의 자	김향숙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5. 2. 18.

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(김향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9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18.

발 의 자 : 김향숙, 김석한, 김원순,
허옥희, 김희태, 이쌍자
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·예방을 위한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주요내용

- 가.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(안 제3조)
- 나. 위촉, 임기 및 해촉(안 제4조 및 제5조)
- 다. 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(안 제6조)
- 라. 신고 절차 등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환경정책기본법」
- 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3호
 - 예고기간: 2025. 2. 18.(화) ~ 2025. 2. 24.(월)[6일간]

- 예고결과: 의견 1건(환경과)

조례안 내용	수정안	수정이유
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명명된 “명예환경감시원”	조례안에 명명된 “명예환경감시원”을 “민간환경감시단” 등으로 명칭 일괄 변경	본 조례에 명명된 “명예환경감시원”이란 명칭은 환경부 “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(2014.2.)”에 따라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운영하는 “명예환경감시원”과 중복되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“민간환경감시단” 등으로 명칭 일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·예방을 위한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오염” 및 “환경 훼손”이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.
2. “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”(이하 “명예환경감시원”이라 한다)이란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·신고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증”(이하 “명예환경감시원증”이라 한다)이란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)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환경훼손 행위 및 대기·수질·소음·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
2.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
3.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

4.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개별 사업장을 출입·감시하는 행위
2.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

제4조(위촉) ①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명예환경감시원이 되고자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.

1.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자
2.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읍·면장, 환경관련 기관·단체에서 추천하는 자

②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기 및 해촉)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출타, 질병,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2.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

3.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

제6조(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) 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.

② 명예환경감시원은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7조(신고 절차 등) ① 명예환경감시원은 오염 우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고한 명예환경감시원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 및 활동지원 등) 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, 전문지식 제공,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고 성 군 명 예 환 경 감 시 원 증

(앞면)

<u>명예환경감시원증</u>	
(제	호)
사 진	
(3cm×4cm)	
성 명:	
생년월일:	
위촉기간:	
고 성 군 수(직인)	

(뒷면)

1.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계도활동,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,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.
2.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.
3.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처 : 고성군청 환경과

○ 용지규격 : 6cm×9cm (가로×세로)

○ 지 질 : 120L/B

○ 색 상 : 노란색

○ 사 진 : 3cm×4cm (가로×세로)

[별지 제3호서식]

[illegible]

관 계 법 령(발췌)

□ 환경정책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27., 2019. 1. 15.>

4. “환경오염”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 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 방해,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
5. “환경훼손”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(濫獲) 및 그 서식지의 파괴, 생태계질서의 교란, 자연경관의 훼손, 표토(表土)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.